이화젠더법학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0. 7. 30.

개정 2016. 1. 26.

개정 2021. 4. 22.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 간하는 학술지인 『이화젠더법학』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의 투고자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화젠더법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소는 『이화젠더법학 』 원고모집 공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투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화젠더법학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6.>

제3조(연구윤리 위반행위)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이화젠더법학』에 게재된 논문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논문 등의 내용에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 는 등의 표절행위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논문 등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경우
3. 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4. 논문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5.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드는 위조행위를 하는 경우
6. 연구 과정, 연구 재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조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논문 등은 『이화젠더법학』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3조의2(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① 저자는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미리 밝혀야 한다.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논문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인에게 밝혀야만 한다. 만약 심사할 논문과 이해 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4. 22.>

제3조의3(특수관계인)①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신설 2021. 4. 22.>

제4조(출판 업적의 명기)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5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 심의의결기구)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이 연구윤리 관련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⑥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윤리규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1차 검토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행위가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⑨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에 대해 심의대상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 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⑩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⑪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6.]

제8조(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고,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개정 2016. 1. 26.>

1. 학술지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 등의 삭제
2. 학술지에 3년 이상 논문 등의 게재금지
3. 연구소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6개월간 공고
4. 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 공지
5.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 등에 위반내용을 통보

제10조(부칙) 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6.1. 26.>

②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화젠더법학』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이화젠더법학』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붙임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예시)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또는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양식 예시입니다.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는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 논문을 의미함.

* 이 양식은 한국연구재단이 배포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추가-'를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 연구과제 개요 (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란에 √표시)

가족 (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 (Conference)		학술지 (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연구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 관계인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연구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서명
저자 A	( )%	( )%	( )%	( )%	( )%	
저자 B	( )%	(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 (예시)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함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서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